

보안업무취급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보안업무취급규정」 반영

* 개발정보를 대외비 정보에 포함, 대외비의 접근·열람·복사 및 관리 규정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 개발정보를 대외비에 포함하여 대외비의 용어정의를 구체화하고, 대외비의 생산·보관·반출 등 관리기준 마련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지원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지원처 송기백 차장
- 담당자(이메일) : songkibaek@khug.or.kr
- 전화번호 : 051-955-5653
- 팩스번호 : 051-955-5405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대외비”라 함은 비밀이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비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원들의 정보공유가 불가피한 사항 나. 리츠 사업발굴, 기금 및 리츠 출자 심사 사전협의, 민간 제안 공모업무 중 비밀에 준하는 것으로 공개 이전에 누설되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부동산개발정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비밀에 준하는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외부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	부동산개발정보를 대외비에 포함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제3장 비밀의 취급 제13조(비밀의 분류) ①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다만, 규정 제2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비밀의 취급 제13조(비밀의 분류) ①----- ----- ----.<제2조제2호로 이기 후 삭제> <신설 제30조의2로 이기 후 삭제>	중복내용 삭제 제30조의2 신설에 따라 중복내용 삭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대외비 20 . . . 까지 ③~⑤ (생략) 제28조(비밀의 지출) ①~② (생략) <신설>	③~⑤ (현행과 같음) 제28조(----- 반출) ①~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대외비의 생산·관리 등) ① 대외비로 분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각 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보안담당관과 협의한 후 대외비를 생산한다. ②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외비 20 . . . 까지 ③ 각 부서의 장은 대외비를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외비의 접수 및 발송, 보관, 관리기록부, 사본, 보관책임자, 반출 등에 대해서는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외비를 열람·복사·배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기록물관리규정에 따른다.	표현 수정 대외비 생산 시 보안담당관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제13조 제2항 내용 이기 대외비의 보관, 반출 등 관리를 비밀에 준하여 하도록 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내용 반영
[별지서식 제9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체크리스트 (이하 생략) 일반보안 진단 결과 1~8. (생략) * 분임보안담당자는 매월 작성하여 경영지원처 및 정보보안센터에 제출 <신설>	[별지서식 제9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체크리스트 (현행과 같음) 일반보안 진단 결과 1~8. (현행과 같음) * ----- ----- --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체크리스트, 일반보안 진단 항목은 상황에	보안진단 항목 가감이 가능함을 명시 [정보보안센터 개선요청 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u>따라 가감될 수 있음</u>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일부부터 시행한다.	(정보보안센터-1037호]